부 산 지 방 법 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23137 부동산강제경매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0. 28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윤미순 전자서명완료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최선순위 설정	2019.11.29. 근저당권			배당요구종기	2026. 2. 9.
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

점유자 성 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 분	점유의 권 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외국인등록(체류지변경신고)일자·사업자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이경세 (채권양도)	808호	등기사항전부증명서	주거 주택임차권자	2022.03.02.	50,000,000	292,000	2022.03.02.	2023.05.11.	

<비고>

이경세(채권양도):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.10.30.이고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승계함.
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
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

비고란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23137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-2
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
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10
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0층 공동주택
지2층 782.81㎡
지1층 944.105㎡
1층 598.39㎡
2층 778.09㎡
3층 778.09㎡
4층 619.625㎡
5층 608.795㎡
6층 608.795㎡
7층 608.795㎡
8층 608.795㎡
9층 608.795㎡
10층 608.795㎡
11층 608.795㎡
12층 608.795㎡
13층 608.795㎡
14층 608.795㎡
15층 608.795㎡
16층 608.795㎡
17층 608.795㎡
18층 608.795㎡
19층 608.795㎡
20층 608.795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8층808호
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 22.408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-2
대 1252.6㎡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대지권의비율 : 1. 1,252.6분의 3.5

감정평가액 117,000,000
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12.07	117,000,000	11,700,000
2회	2027.01.11	81,900,000	8,190,000
3회	2027.02.15	57,330,000	5,733,000
4회	2027.03.15	40,131,000	4,013,100